

## 신청 대상자 및 제출처

### 제출 대상

-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, 개식용 도축·유통상인\*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\*\*

\* (도축·유통상인)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·처리하거나,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·판매하는 자  
 \*\* (개식용 식품접객업자)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·가공하여 판매하는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

- 다만, 개식용종식법 제9조에 따라 법 공포일('24.2.6) 이후 신규 운영한 개식용 업체는 신고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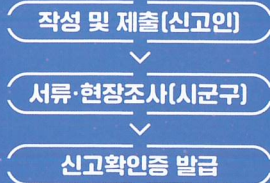
### 접수처

-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청·시청·군청·구청,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제출



## 신고

### 신고 절차



\*신고 내용 검토를 위해 농장 및 영업장 현장 조사 일자를 신고 처리 기간(10일) 중으로 협의해야 하며, 시군구 담당자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.

### 증빙자료 제출 안내

- (신고) 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운영신고서(별지 제1호~제3호 서식, 신고내용별 증빙자료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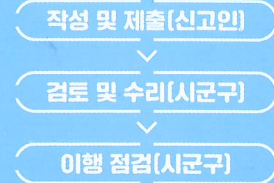
\*예시 이외에 거래 장부 등 신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, 서류, 기록 최대한 제출

### 증빙자료 예시

공통	신분증, 사업자등록증(유사업종),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임대차계약서 등		
개사육농장	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·증명서 (가축분뇨법)	도축유통상인	도축·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
	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·확인서(농어업경영체법)	식품접객업	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  그 밖에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
	폐기물처리업 신청서, 폐기물 위탁재활용(운반) 계약서(폐기물관리법)		
	그 밖에 사육마릿수, 사육면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		

## 이행계획서 제출

###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



### 작성 서류

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(별지 제5호 서식)

### 작성 기준

#### 폐업예정일

'27.2.6. 이내로 폐업 필요(개식용종식법 제5조)

#### 이행조치 계획사항

폐업과 전업에 관한 이행조치 상세 명시

- (사육견 종식 계획) 현재 사육 중인 개의 처리 계획 (유통 등), 개의 증입식 중단(암수 분리, 중성화 등) 등 구체적으로 명시(개사육농장만 해당)
- (시설물 철거 등 폐업 계획) 개 식용 관련 시설물별 철거 기간 및 계획 등 폐업에 필요한 이행조치 구체적으로 명시
- (전업 계획) 전업 희망 업종 및 내용, 예상 전업 시기 등 (전업 희망시)

\*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('24.8 예정) 후 6개월 이내에 수정, 보완하여 제출 가능

